



부산남구공보

제 1250호 2023.9.21.(목)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선 람	기 관 의 장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68 / FAX 607-4919

입법예고

-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118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1183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

공 람									
--------	--	--	--	--	--	--	--	--	--

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3-118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모호한 표현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주민자치회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보고기한 명확화(안 제14조)
- 다. 사용료 등 기준의 중복되는 범위 표현 정비(안 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5층 행정지원과(대연동, 남구청)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 전화번호 : 051) 607-4115 (Fax. 607-4109)
- 이 메 일 : amore6896@korea.kr

붙임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3월전”을 “1월 31일”로 한다.

별표의 다용도실 운영의 기준란 중 “50㎡ 이하”를 “50㎡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 1월 31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사용료 등 기준(제10조제3항 및 제4항관련)	[별표] 사용료 등 기준(제10조제3항 및 제4항관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사용료	시설·장비활용 프로그램 이용	(생략)		
	다용도실 운영	1회 (2시간) 50㎡ 이상	10,000원	(생략)
		50㎡ 이하	5,000원	
비품 이용 (벼루, 붓, 약기 등)	(생략)			
수강료	강사 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	(생략)		
기타	(생략)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사용료	시설·장비활용 프로그램 이용	(현행)	행음)	
	다용도실 운영	1회 (2시간) 50㎡ 이상	10,000원	(현행과 같음)
		50㎡ 미만	5,000원	
비품 이용 (벼루, 붓, 약기 등)	(현행)	행음)		
수강료	강사 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	(현행)	행음)	
기타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동 주민자치회 실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함

3. 주요내용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를 동 실정에 맞게 사용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안 제11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5층 행정지원과(대연동, 남구청)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 전화번호 : 051) 607-4115 (Fax. 607-4109)
- 이 메 일 : amore6896@korea.kr

붙임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자치회”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은 수강료의 징수금액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를 “자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조 ----- 레----- -----.
제2조 (주민자치회의 명칭) 조례 제4 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동별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2조 (주민자치회의 명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제3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기본 시설 및 부속 설비로 한다.	제3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 자치회----- -----
제7조 (수강료 징수 제외) 조례 제10 조 제1항에 따른 무상 이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 2. (생 략)	제7조 (수강료 징수 제외) ----- -----. 1. ----- ----- 위원회----- ----- 2. (현행과 같음)
제8조 (수강료 사용원칙) 조례 제10 조 제5항에 따라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8조 (수강료 사용원칙) ----- ----- ----- ----- -----

확보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1. (현행과 같음) 2. ----- 위원회----- -----
제11조 (수당 등 지급) ① (생 략) ②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은 수강료의 징수금액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일지 등)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제15조 (운영일지 등) ----- 자치회----- ----- -----. 1. ~ 6. (현행과 같음)